

충남도립대학교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규정

제정 : 2020. 2. 28. 규정 제64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남도립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이하 “전공심화과정”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① 전공심화과정은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전문학사과정의 모집단위와 관련이 있는 모집단위에서 설치하며, 학과 명칭은 학칙에 의한다.

② 전공심화과정의 입학정원은 고등교육법 관련 규정 및 교육부 설치인가 기준에 따라 정원 외로 모집하여야 하며, 모집단위별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전문학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의 100% 이내로 모집한다.

제3조(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 ① 전공심화과정의 주요사항 심의 및 의결, 입학 사정, 자체평가 등을 위하여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위원은 교수 및 관련 산업체 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 산업체 인사를 50%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4조(모집단위별 교육과정운영위원회) ① 전공심화과정의 교육과정 편성,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교육과정 운영 점검 및 개선을 위하여 모집단위별로 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모집단위별 교육과정편성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

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모집단위의 학과장이 되고, 위원은 교수 및 관련 산업체 인사 중에서 학과장이 위촉하며, 산업체 인사를 50%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5조(수업연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 이상으로 한다.

제6조(동일계열의 범위) ① 동일계열 관련학과는 전공심화과정 모집학과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관련학과를 말한다.

② 동일계열 내에서 전공심화과정 학과의 관련학과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관련학점을 50% 이상 이수한 경우를 학과 관련성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학과 관련성 등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입학전형방법) ① 서류전형으로 실시하되, 필요시 면접고사를 추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전형방법은 모집요강에 의한다.

② 입학전형 방법은 당해학년도 모집요강에 의해 정하며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가 심의한다.

제8조(학생모집 시기) 학생의 모집 시기는 모집요강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9조(미등록 충원) 학생의 미등록충원은 매년 교육부가 지정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2학기에는 할 수 없다.

제10조(교육과정의 편성) ① 교육과정은 모집단위별 교육과정편성운영위원회에서 편성하여,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확정한다.

② 교육과정은 현장실무 중심으로 편성하며, 전문학사과정의 교육과 연계된 전공심화교육에 중점을 두어 편성·운영한다.

제11조(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전공심화과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시장환경변화 등 산업체의 요구사항을 능동적으로 수용
2. 전문학사과정의 교육과 연계된 전공심화교육에 중점

제12조(학급의 편성) 전문학사과정과 구별하여 별도의 학급으로 편성하며, 학급당 인원이 30명을 초과하는 경우 분반하여야 한다.

제13조(수업의 형태) 주간, 야간, 모집단위별로 총장이 정하여 운영한다.

제14조(최소이수학점) ①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최소 이수학점은 전문학사과정의 인정취득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학기별 최소이수학점은 9학점 이상으로 하며 최대 20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초과학기의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이수할 수 있다.

제15조(전문학사과정 학점 인정) 전문대학 또는 동등 이상 학력소지자의 이수학점 인정범위는 2년제 학과 졸업자는 80학점, 3년제 학과 졸업자는 110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제16조(학위명칭 및 수여) 학사학위의 종류는 4년제 대학교 또는 산업대학교의 학위를 준용하여 학사학위를 총장이 수여한다.

제17조(학사관리 원칙) 학기, 수업일수, 휴·복학, 자퇴, 제적, 재입학, 학생활동, 상벌 등은 대학의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에 의하여 전문학사과정과 동일한 학사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자체평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전공심화과정 운영학과는 매 학년말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기타) 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운영위원회에서 결

의된 세부사항의 결정은 총장이 정한다.

부 칙(규정 제641호)

본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